원흥성광교회 제직선출 규정

Ver0. 2021.12.19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_정관에서 위임된 제직선출, 안수와 취임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제직선출위원회) ①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(이하 "본교회"라 한다)의 제직선출 및 관리를 위하여 제직선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등 피택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2. 서리집사 임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3. 기타 원로, 명예, 협동 등 제직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장로회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재정총무국담당 사역자, 재정총무국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,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, 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.

⑤ 위원회는 제직선출 대상자 심의 및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3조 (제직의 구분) ① 본교회의 제직은 장로, 안수집사, 권사, 서리집사로 한다.

② 장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시무장로는 장로 취임 후 65세 되는 해 말까지의 장로
2. 원로장로는 은퇴한 시무장로
3. 명예장로는 시무 안수집사로 은퇴한 안수집사
4. 협동장로는 특별한 사유로 장기출타 중인 장로와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로서 시무장로로 임직하지 않은 장로

③ 안수집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시무안수집사는 집사 안수 후 65세 되는 해 말까지의 안수집사
2. 명예안수집사는 원흥성광교회 등록 후 5년 이상이고 66세 이상인 서리집사
3. 협동안수집사는 특별한 사유로 장기출타 중인 안수집사와 타 교회에서 집사안수를 받고 전입한 안수집사

④ 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시무권사는 권사 취임 후 65세 되는 해 말까지의 권사
2. 명예권사는 은퇴한 권사와 원흥성광교회 등록 후 5년 이상이고 66세 이상인 서리집사
3. 협동권사는 특별한 사유로 장기출타 중인 권사와 타 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고 전입한 권사

⑤ 원로, 명예, 협동 등의 직분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.

⑥ 명예안수집사, 명예권사의 경우 제3항 제2호, 제4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리집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추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할 수 할 수 있다.

제4조 (장로의 피택 및 취임) ① 피택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일성수, 예배, 십일조, 봉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타의모범이 되는 자
2.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
3. 본교회 안수집사로 3년 이상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, 집사 안수 후 성서대학 3과목이상 이수한 자
4. 부부가 함께 본 교회를 섬기는 자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상자를 심의하여 당해 피택 정수를 중직자회의에 추천한다.

③ 피택자의 결정은 중직자회에서 후보자별 무기명 비밀투표로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결정한다.

④ 취임은 피택된 자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⑤ 장로의 정원은 본 교회 출석교인 100명당 1명 선으로 한다.

제5조 (안수집사의 피택 및 안수) ① 피택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일성수, 예배, 십일조, 봉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타의모범이 되는 자
2. 본 교회 성서대학 과정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
3.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
4. 침례를 받은 자로 본 교회 등록 후 서리집사로 5년 이상, 사역부서에서 성실히 봉사한 자
5. 부부가 함께 본 교회를 섬기는 자

② 피택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상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해 피택 정수의 인원을 추천하고, 중직자회에서 참석자 2/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찬성여부는 추천된 대상자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③ 집사 안수는 피택된 자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방회 시취 절차를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④ 안수집사의 정원은 본 교회 출석교인 50명당 1명선으로 한다.

제6조 (권사의 피택 및 취임) ① 피택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일성수, 예배, 십일조, 봉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타의모범이 되는 자
2. 본 교회 성서대학 과정 중 3과목 이상 이수한 자
3.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여성
4. 침례를 받은 자로 본 교회 등록 후 서리집사로 5년 이상 성실히 봉사한 자. 단, 권사제도가 없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타 교회에서 전입한 경우는 이전 교회 서리집사 경력을 인정한다.
5. 사역조직, 여선교회, 가족 공동체 및 기타 기관 중 2개 이상 기관에서 성실히 봉사한 자

② 피택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상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하고 중직자회에서 참석자 2/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찬성여부는 대상자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③ 취임은 피택된 자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7조 (타 교회 등 경력인정) ①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로 등록 후 3년이상 성실히 봉사한 경우, 60세 이상이거나, 안수집사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장로 피택 대상으로 하고, 미달한 경우는 안수집사 피택 대상으로 한다.

②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자 또는 타 교단에서 안수집사(남자 권사)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성실히 봉사한 자는 안수집사 피택 대상으로 한다.

③ 타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성실히 봉사한 자는 권사 피택 대상으로 한다.

④ 타 교회 등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타 교회 등에서 받은 직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서리집사의 임직) ① 서리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교회 등록 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3년 이상 봉사한 자
2. 기혼자(미혼은 40세 이상)
3. 본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한 자
4. 침례를 받은 자로서 문답 또는 집사교육을 수료한 자
5. 타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고 본 교회 등록 후 3년이상 봉사한 자 중 문답 또는 집사교육을 수료한 자

② 임명절차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상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하고 매년 12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

③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9조 (제직의 신앙지침) ① 제직은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장기 출타시 교회에 미리 신고한다.

② 제직은 성서대학에 등록하여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.

③ 제직은 신앙, 봉사, 언행이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④ 제직은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.

⑤ 제직은 교회 예산에 대하여 청지기적 사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제직은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⑦ 제직은 은사와 소명이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봉사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⑧ 제직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.
⑨ 제직은 성경, 침례교규약, 본교회의 제 규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경과조치) ①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성광교회(이하 “성광교회”라 한다.)에서 분립하여 설립된 교회로 성광교회 성도 중에서 본 교회로 등록한 성도는 성광교회에서의 제직 경력, 헌금 내역, 교육실적, 봉사활동, 등록 기간 등 모두를 그대로 인정한다.
② 제4조 제5항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 창립시 시무장로, 시무안수집사가 은퇴, 제적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 수 만큼 피택, 취임 및 안수할 수 있다.

제11조 (부칙)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9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